

의안번호	2219792
의 퇴 인	황정아 의원
회 답 일	2026. 7. 15.
추 계 번호	26F333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0조의35 (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제품의 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국내 생산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※ 국가전략기술제품: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－ 적용요건: 국가전략기술제품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 － 공제금액: 생산비용의 15% － 공제 한도: 해당연도 법인세·소득세의 10% － 대상 제품의 생산수량 산정 및 생산수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: 시행령 위임사항 ○ 적용기한: 2035.12.31.	
2	안 제100조의36 (국가전략기술사업 연구개발· 시설투자 및 국내생산세액공 제에 대한 전환급 특례)	○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2개 과세연도에 발생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환급 － 적용대상: 국가전략기술 연구·인력개발, 시설투자 및 국가전략기술제품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－ 환급금액: 해당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50%	
2	안 제144조 (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 기업에 대 해 과세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적용으 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이월공제 허용 － 이월공제기간: 10년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0조의35 (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0조의36 (국가전략기술사업 연구 개발·시설투자 및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 한 전환급 특례)	상동
3	안 제144조 (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)	상동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100조의35, 제100조의36, 제144조)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국내생산 세액공제가 신설되고,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·시설투자 및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에 대한 선환급 특례와 국내생산 세액공제 미공제금액의 10년간 이월공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 - 안 제100조의35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(이하 ‘국가전략기술제품’)의 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, 법인세·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
 - 적용요건: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국가전략기술제품 생산
 - ※대상 제품의 생산수량 산정 및 생산수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: 시행령에 위임
 - 공제금액: 생산비용의 15%
 -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10%
 - 적용기한: 2035.12.31.
 - 안 제100조의36은 국가전략기술 연구·인력개발, 시설투자 및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을 일부 환급하는 특례를 신설
 - 환급대상: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2개 과세연도에 발생한 미공제 세액공제액
 - 환급금액: 해당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50%
 - 안 제144조는 국가전략기술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
 - 이월공제대상: 과세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
 - 이월공제기간: 10년
- (안 제100조의35, 제100조의36, 제144조)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가전략기술제품의 생산수량을 추정하고, 이를 해당 기업의 과세정보와 결합하여 세액공제 규모를 산정해야 하나, 시행령 위임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

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국가전략기술제품의 생산수량 및 생산비용 산정방식, 수량 보고 절차 등 세액공제 산정에 필요한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공제방식을 구체화할 수 없음
 - 또한 생산수량 중 국내 생산여부 등 요건을 만족하는 비중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향후 세액공제를 추정할 수 없음
-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, 미공제금액의 환급 및 이월공제 특례에 따른 세수효과 역시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에산정 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